

대구예술대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관리규정

(개정 2023.11.20. 교무위원회)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인조잔디운동장(이하 “운동장”이라 한다)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업무관장) 운동장의 유지·보수는 사무처에서 하고 운영은 학생처에서 관장한다.

제3조 (운영위원회) ① 운동장의 체계적 유지,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조잔디운동장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, 사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

제4조 (사용원칙) ① 운동장은 본 대학교의 운동선수 훈련 및 경기 등 체육활동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본 대학교 운동팀과 외부팀의 친선 및 연습을 위한 운동장 사용은 본 대학교 운동팀이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5조 (외부단체 사용) 외부단체의 운동장 사용은 본 대학교 운동팀의 운동선수 훈련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
제6조 (사용신청) 외부단체에서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1주일 전에 사용신청서(별지서식)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 (사용허가) 운동장 사용허가는 학생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.

제8조 (사용료 징수) ① 외부단체에서 운동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 및 면제 할 수 있다.

② 외부단체가 운동장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한다.

1. 50명 이내의 단체 : 4시간 기준 25만원
2. 50명 이내의 단체 : 1일 35만원(8시간 기준)
3. 51명 ~ 100명 이내 : 1일 45만원(8시간 기준)
4. 100명 이상 : 1일 55만원(8시간 기준)

③ 야간조명 사용시 전기료는 별도로 가산한다.

제9조 (사용료납부) 사용료는 허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본 대학교 사무처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사용제한) 운동장 사용목적과 상위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11조 (준수사항) 외부단체에서 운동장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사용일시, 사용인원, 사용목적
- ② 운동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.
- ③ 운동장에 음식물 반입금지
- ④ 전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단체에게는 운동장 사용을 차후 허가하지 아니한다.
- ⑤ 운동장 사용 중 물품 또는 기타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.

제12조 (기타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서식)

인조잔디운동장 사용신청서

담 당	계 장	팀 장	처 장

사용일시	20 년 월 일	시부터	
	20 년 월 일	시까지 (일 간)	
신청단체		참 석 인 원	명
		사 용 료	원
대표자	직위	성 명	
사용목적			
사용수칙	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할 때에는 금연, 음식물 반입금지.		

위와 같이 인조잔디운동장 사용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:

①

연락처(H.P) :

대구예술대학교 학생처장 귀하

대구은행 : 504 -10 - 172005 - 6

예금주 : 대구예술대학교

대구예술대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관리지침

(개정 2020.11.17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23.11.20. 교무위원회)

제1조 (사용기간) ① 장기계약은 1년 단위로 한다.

② 계약기간 중 본교 운동팀의 대회출전 훈련기간 중에는 운동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조 (관리인) ①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인 또는 근로 학생을 둔다.

제3조 (유지관리비) ① 잔디운동장 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외부단체 장기 계약시 다음과 같이 유지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구 분	월 2회		월 4회		비 고
1년기준	4시간	8시간	4시간	8시간	
	350만원	650만원	650만원	950만원	

※ 야간조명 사용시 전기료는 별도로 납부한다.

제4조 (관리비유예) ① 본교 학생, 교직원들의 운동장 사용시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는다. 단. 사용신청서는 1주일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본교 교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외부단체와 경기에는 관리비 5만원을 징수한다. 단. 교직원 참여인원이 3명 이상 시 적용한다.

③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(관공서, 유관기관 등)에는 관리비를 면제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